# 2020년도 제1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## I. 회의 개요

o 일 자 : 2020. 9. 4.(금요일)

o 방 법 : 온라인심의

o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
- 심의위원 : 권헌영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박정인 위원, 홍지만 위원

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**의결안건**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·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### 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-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9건(안건번호 제2020-111107호~111206호)
 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 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

#### 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본 사건은 웹하드사이트(▼▼▼▼, ★★★★★★ 등)에 불법 복제 영상물(영화, 방송)들을 불법 공중송신한 사건으로 당해 복제물 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임
- B 위원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영화, 방송 콘텐츠에 관한 것들로 그 중에는 (영화) 언더워터 (2020), (영화) 콜 오 브 와일드 (2020), (방송) 방과 후 제방 일지 (2020), (방송) 사랑하는 소행성 (2020), (방송) 원헌드레드 (2020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러한 사안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
- C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111107호~111206호{'모바일메가파일' 사이트의 '(방송)로크 앤 키(2020)' 등 229건의 게시물}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방송, 영화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- D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111107호~111206호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 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"시정 권고" 가결 의견임. 단, 기 삭제되거나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"경고의 시정권고" 의견임.

#### 2020년 제19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
#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9. 15.

분과위원장 권헌영

위원 박성호

위원 박정인

위원 홍지만